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종환, 강석주, 김규남,
김태수,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신복자, 윤영희,
이성배, 이숙자, 이효원,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라는 용어는 법인이나 기관 성격이기보다 개인 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시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개정하여 법시행 규칙과 통일성을 기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위탁 경우에 한하여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임.

따라서, 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에만 적용하기보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행적 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으로 규정하여 법령체계와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함(안 제6조 제3항).

나.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를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u>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u>,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u>최초 위탁</u>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p>	<p>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u>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u>,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u>최초 위탁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u>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재계약시에는</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p>			

현행	개정안
	의를 같음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1) 간 용어 일치 통해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수탁자”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제4항에 시설 운영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²⁾도 서울시 재정수입 손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2)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동의안 심사·의결의 경우 통상적인 시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회의 진행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